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5,298,953	16,958,969
일반회계	556,163,040	16,684,891
특별회계	9,135,913	274,077
기타특별회계	9,135,913	274,077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170,100	5,103
건축진흥특별회계	505,000	15,15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797,160	23,915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42,387	37,272
삼계도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4,800	444
드림빌특별회계	934,962	28,049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48,044	7,441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89,685	2,691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13,342	12,4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720,433	141,61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74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